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0 선고 2019나49733 판결 [물품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0 선고 2019나4973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13 선고 2018가단19703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우일 담당변호사 김상호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송정우, 이근창

변론 종결2020. 5. 13.

판결 선고2020. 6. 10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13. 선고 2018가단19703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5,7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. 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"2. 추가 판단"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 불법의약품을 거래한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, 을 제2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의 목적물인 의약품이 불법의약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태안

판사박성민

판사김연수